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2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3. 6. 12. 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【행정지원국 소관】	구청장

행정건설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

1. 안 건 명

○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○ 제출일자 : 2023년 5월 19일(금)

○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행정건설위원회 회부일자

○ 2023년 5월 25일(목)

4. 관련근거

○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(예비비)

○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(예비비)

[검토보고]

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

Ⅰ 마포구 예비비 지출 현황

(단위: 원)

회 계		통계목	예산액	지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지출잔액
일반회계		합 계	17,168,217,000	5,468,756,000	5,050,986,028	3,600,000	414,169,972
		일 반 예 비 비	6,000,000,000	2,434,407,000	2,434,308,375	0	98,625
		재 해 · 재 난 목 적 예 비 비	11,168,217,000	3,034,349,000	2,616,677,653	3,600,000	414,071,347
기 타 특 별 회 계	마포농수산물 시장특별회계	소 계	40,569,000	0	0	0	0
		일 반 예 비 비	40,569,000	0	0	0	0
	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	소 계	92,651,000	0	0	0	0
		일 반 예 비 비	92,651,000	0	0	0	0
	건 축 안 전 특 별 회 계	소 계	1,484,205,000	0	0	0	0
		일 반 예 비 비	1,484,205,000	0	0	0	0
	주 차 장 특 별 회 계	소 계	24,360,073,000	19,330,000	18,556,800	0	773,200
		일 반 예 비 비	24,360,073,000	19,330,000	18,556,800	0	773,200

Ⅱ 예비비 지출

가. 일반회계 지출

(단위 : 원)

구 분		지출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집행잔액	예비비 지출 사유
조 직	세부사업					
합 계		222,588,000	222,588,000	0	0	
자치행정과	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(기타부담금)	185,892,000	185,892,000	0	0	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추가납부를 위한 예비비 사용
구민안전과	중대산업재해예방(사무관리비)	36,696,000	36,696,000	0	0	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비사용

나. 특별회계 지출 : 없음

Ⅲ 검토의견

1. 202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

○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,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

-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 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
- 이용,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
- 예산편성이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
- 업무추진비,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될 것임.

○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건 2억 2,258만

8,000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추가납부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음.

○ 행정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음

2. 검토의견

○ 행정지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추가납부와 2021.1.26. 제정된(시행 2022.1.27.)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예비비 지출로 이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지출이라 판단됨.

○ 예비비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에 규정된 것처럼,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비비 집행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예비비로 집행해야만 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, 향후에는 예산의 이용·전용 등으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기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